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형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78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:이형석·송갑석·김승남

조오섭 · 문진석 · 이정문

이용빈 · 윤영덕 · 양기대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,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·수사종결 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「형사소송법」 및 「검찰청 법」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 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

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125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5조제1항 중 "검사"를 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검사"를 각각 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5조(압수물건의 인계) ① 지	제125조(압수물건의 인계) ①
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	
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	
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	
하여 <u>검사</u> 에게 인계하여야 한	검사 또는 사법경찰관
다.	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	2
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	
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<u>검사</u> 에	<u>검사 또는</u>
게 보관증을 인계하고, 소유자	사법경찰관
등에게 압수물건을 <u>검사</u> 에게	검사 또는
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	사법경찰관
야 한다.	